

# 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이스트스프링 개인 신종 MMF 제 1 호[국공채]

2. 집합투자규약 변경 사유 :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(‘19.9.16.)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
- 법시행령 (2020.04.01 시행) 개정사항 반영

3. 집합투자규약 변경시행일 : 2020년 6월 23일

4. 집합투자규약 변경 주요 내용

변경전	변경후
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<u>예탁</u>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<u>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</u>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(“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”라 한다. 이하 같다.)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&lt;생략&gt;</p> <p>2. <u>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</u>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④<u>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(“실질수익자”라 한다. 이하 같다.)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,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</u></p> <p>⑤&lt;생략&gt;</p>	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<u>전자등록</u>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한다.)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</u></p> <p>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 (“수익증권고객계좌부”라 한다. 이하 같다.)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2. <u>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</u></p> <p>③&lt;삭제&gt;</p> <p>④<u>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</u></p> <p>⑤&lt;현행과 동일&gt;</p>
<p>제11조(예탁 수익증권의 반환)</p> <p>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</p>	<p>제11조 &lt;삭제&gt;</p>

<p>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,000좌권, 10,000좌권, 100,000좌권, 1,000,000좌권, 10,000,000좌권, 100,000,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.</p>	
<p>제12조(수익증권의 재교부)</p> <p>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("현물보유수익자"라 한다. 이하 같다)는 분실·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 &lt;삭제&gt;</p>
<p>제13조(수익증권의 양도)</p> <p>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<u>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,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.</u></p> <p>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예의 <u>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③&lt;생략&gt;</p>	<p>제13조(수익증권의 양도)</p> <p>①수익권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<u>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,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</u></p> <p>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<u>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.</u></p> <p>③&lt;현행과 동일&gt;</p>
<p>제14조(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)</p> <p>①~④&lt;생략&gt;</p> <p>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<u>실질수익자</u>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실질수익자</u>의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</p>	<p>제14조(수익자명부)</p> <p>①~④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<u>수익자</u>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수익자</u>의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</p>

<p>2. <u>실질수익자가</u>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</p> <p>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("실질수익자명부"라 한다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<u>실질수익자의</u>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<u>실질수익자명부</u>에의 기재는 <u>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</u>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<u>실질수익자는</u>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⑧&lt;생략&gt;</p>	<p>2. <u>수익자가</u>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</p> <p>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<u>수익자명부</u>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<u>수익자명부</u>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<u>수익자의</u>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&lt;삭제&gt;</p> <p>⑧&lt;현행과 동일&gt;</p>
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<u>투자대상</u>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다만, 채무증권(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, 사채권,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,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)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상을 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>1.~9. &lt;생략&gt;</p> <p>②&lt;생략&gt;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<u>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다만, 채무증권(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, 사채권,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,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)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상을 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>1.~9.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②&lt;현행과 동일&gt;</p>
<p>제24조(수익증권의 판매)</p> <p>①&lt;생략&gt;</p> <p>②<u>투자자는</u>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.</p> <p>③&lt;생략&gt;</p>	<p>제24조(수익증권의 판매)</p> <p>①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②<u>고객은</u>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.</p> <p>③&lt;현행과 동일&gt;</p>
<p>제26조(환매업무)</p> <p>①~③&lt;생략&gt;</p> <p>④<u>실질수익자(법 제3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)가</u>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⑤<u>현물보유수익자가</u>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6조(환매업무)</p> <p>①~③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④&lt;삭제&gt;</p> <p>⑤&lt;삭제&gt;</p>

<p>⑥ <u>집합투자업자(투자신탁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본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⑥ &lt;삭제&gt;</p>
<p>제27조(환매가격)          ① <u>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제2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u>          ②~④ &lt;생략&gt;</p>	<p>제27조(환매가격)          ① <u>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u>          ②~④ &lt;현행과 동일&gt;</p>
<p>제38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          ①~③ &lt;생략&gt;          ④ <u>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(消却)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8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          ①~③ &lt;현행과 동일&gt;          ④ &lt;삭제&gt;</p>
<p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         ①~③ &lt;생략&gt;          ④ &lt;신설&gt;</p>	<p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         ①~③ &lt;생략&gt;          ④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·투자 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제 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은 이 투자신탁 재산을 한도로 하여 이 투자신탁 재산에서 인출한다.</u></p>
<p>제48조(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)          ① &lt;생략&gt;          ② <u>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.</u>          1. <u>소각</u>          2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</p>	<p>제48조(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)          ① &lt;현행과 동일&gt;          ② <u>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.</u>          1. <u>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</u>          2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</p>